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글로벌 선순위 담보 채권 증권투자신탁[USD](채권-재간접형)

2. 정정대상 서류: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3. 정정사유:

- 결산 업데이트
-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반영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 2 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연혁 업데이트	(생략)	연혁 추가
제 2 부.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결산업데이트	(생략)	운용현황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제 2 부.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반영	가. 투자 대상 (생략) (추가)	가. 투자 대상 (현행과 같음) 주 1)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운용방법으로 상기 증권의 대여를 할 수 있음 1. 수익률 증진: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2.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주 2)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음 (이하 현행과 같음)
제 2 부.10. 집합투자기구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반영	(추가)	증권대차 거래위험: 증권대차 거래가 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판

투자위험 다. 기타 투자위험			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2 부.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결산에 따른 수익률 변동성 업데이트	수익률 변동성 <u>7.80%</u>	수익률 변동성 <u>7.93%</u>
제 2 부.13.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결산 업데이트	(생략)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제 2 부.14.나. 과세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1) ~ 3) (생략)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형(C-P),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C-Pe),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형(S-P) 가입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이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관련 주요 사항] (생략) 세액공제: -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u>400</u> 만원 이내 세액공제 <u>12%</u> -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u>4 천만원</u>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u>5 천</u> <u>5</u> 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u>400</u> 만원 이내 세액공제 <u>15%</u>	1) ~ 3) (현행과 같음)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형(C-P),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C-Pe),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형(S-P) 가입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이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관련 주요 사항] (현행과 같음) 세액공제: -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u>600</u> 만원 이내 세액공제 <u>13.2%</u> (지방소득세 포함) -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u>4 천 5</u> 백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u>5 천</u> <u>5</u> 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u>600</u> 만원 이내 세액공제 <u>16.5%</u> (지방소득세 포함)

		<p>- 해당 과세기간에 <u>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2%</u> (생략) ※ 종합소득이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에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 거주자 [2020년 1월 1일 이후 연금 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2%</p> <p>- 해당과세기간에 <u>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천 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5%</u></p> <p>- 해당 과세기간에 <u>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2%</u>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 ~ 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3.3%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한도: 1,200만원(공적연금소득 제외)</p> <p>(생략) 부득이한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 13.2%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종합과세 가능)</p> <p>(생략)</p> <p>5) 퇴직연금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p>	<p>(삭제)</p> <p>(현행과 같음) (삭제)</p> <p>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 ~ 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지방소득세 포함)</p> <p>분리과세 한도: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시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소득 분리과세(16.5%, 지방소득세 포함)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가능 (현행과 같음) 부득이한 연금외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 ~ 3.3%(나이에 따라 변경, 지방소득세 포함)</p> <p>(현행과 같음)</p> <p>5) 퇴직연금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p>
--	--	---	---

		<p>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형(C-P2),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형(C-P2e)가입자</p> <p>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①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종합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금액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 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 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p> <p>해당 과세기간에 종합 소득금액이 4 천만원 이하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 천 500 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p> <p><u>단,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 소득금액이 1억 원 초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 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 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u></p> <p>(생략)</p> <p>- 종합 소득이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 14 조제 3 항제 6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 거주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p>	<p>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형(C-P2),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형(C-P2e)가입자</p> <p>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①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종합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금액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 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 만원 중 적은 금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p> <p>해당 과세기간에 종합 소득금액이 4 천 5 백만원 이하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 천 500 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6.5%(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p> <p>(삭제)</p> <p>(현행과 같음)</p> <p>(삭제)</p>
--	--	--	--

		<p>「소득세법」 제 59 조의 3 을 적용하는 경우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당해연도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 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 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해당 과세 기간에 종합소득 금액이 4 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 천 500 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금액이 1 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 만원이내의 금액)과 연 700 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p>	
		(이하 생략)	(이하 현행과 같음)
제 3 부.1.가.요약재 무정보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반영	(주식 추가) (신설) (신설)	주1) 기타수익에는 증권대여에 따른 수수료 수익 등이 포함 (4기 0달러, 3기 0달러, 2기 0달러) 주2) 기타비용에는 증권차입에 따른 수수료 비용 등이 포함 (4기 0달러, 3기 0달러, 2기 0달러)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주식의 매매회전율>
제 3 부.집합투자기 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결산 업데이트	(생략)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제 4 부.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결산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생략)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	--	--	------------------

집합투자기구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

[집합투자기구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글로벌 선순위 담보 채권 증권투자신탁[USD](채권-채간접형)
2. 정정대상 서류: 간이투자설명서
3. 정정사유:
 - 결산 업데이트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투자비용	결산 업데이트	(생략)	총보수·비용, 동종유형 총보수 및 10,000 달러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 보수·비용 예시 결산일 기준 최근 자료 업데이트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결산 업데이트	(생략)	연평균 수익률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운용전문인력	결산 업데이트	(생략)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및 운용 경력년수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